

계약인수의 불철저로 야기된 분쟁

1. 사건개요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서 골프·악세서리 및 수입잡화를 경영하고 있는 K는 S 화재해상보험(주)와 계약자 및 피보험자:K, 보험의 목적:골프·악세서리 및 수입잡화일체, 보험금액:1억,보험기간: 84년12월 8일~ 85년12월 8일(1년간)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85년 2월 8일 01시 20분경 동 계약자가 임차, 사용중인 'J골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동 건물안에 수용되어있던 상기 보험의 목적이 소실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K로부터 사고통지를 받은 S 화재해상(주)는 S 손해사정(주)에 손해조사를 의뢰하였고 동 손해사정(주)는 다음과 같이 화재경위 및 이태상황을 조사 보고하였다.

● 화재경위: 화재는 85년 2월 8일 01:20분경 동 계약자가 임차, 사용중인 'J골프'에서 발생하였다. 계약자는 85년 2월 7일 21:00분경 퇴근하였으며 점포는 계약자의 처남 C가 맡고 있다가 동일 21:40분경에 퇴근한 후 익일 01:20분경 동 점포앞을 주행하던 택시기사가 'J골프'에서 화



李 惠 求
(한국보험공사 손해보험
심의부 조정과장)

염이 번지는 것을 최초로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일단 발생한 불은 목재로 시공된 내부시설과 상품등을 소실시키면서 2층 목재바다관을 통하여 'J골프' 상층으로 쉽게 확산되었으나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화작업으로 타 건물로는 옮겨 붙지않고 진화되었다.

● 보험목적물 개요: 계약자의 점포는 서울 중구 소공동 'P 호텔' 뒷편 주차장에 접한 편도 2차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D 산업(주)' 소유의 철근 콘크리트 및 조적조 3계건 1동 건물중 1층 4.5평을 임차하여 2개 점포를 간막이로 구분한후 'J골프' 'J양행'이란 2개의 간판을 걸고 영업중이었고 외관상으로는 2개 점포처럼

보이나 'J양행'은 극히 협소하고 단지 상품 진열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동 점포에서는 골프용품 및 악세서리 등의 구입경위가 불확실한 외제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었다.

● 이태상황: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셔터가 내려진 후에 화재가 발생되었고 초기 진화작업에 임하지 못하여 'J골프'내에 진열보관되었던 상품은 전소상태였으나 'J골프'와 인접한 'J양행'은 피해가 없었다.

● 손해액 사정: 85년 2월 8일 현장에서 피해가 없는 보험목적물은 실사확인하였으나 동 계약자 자신의 방화혐의로 경찰이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85년 3월 11일 계약자 임회하에 손해사정을 한 결과 동 계약자의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대부분 외제상품으로 구입경위가 불확실하여 유사품 취급 점포에서 조사된 거래가격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가액 및 이태액을 산정했다.

● 손해액: 18,761,300원

2. 당사자 쟁점

본 건에 대해 신청인 K는 자신이 피해 신고한 재고 및 손해명세서상의 가액은 1억 2천여만원

임에도 1천 8백여만원 밖에 산정이 안된 것은 자신의 점포에 필수적인 재고품이라 할 수 있는 골프채가 단 한세트도 계상되지 않았고 피해신고한 물품중 무려 81개 품목이 이재품목에서 제외되거나 그 수량이 근거도 없이 감멸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피해신고를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임의사정한 부당한 행위이고, 또 N경찰서에서 85년 9월 28일 발행한 '사실증명확인'에 의하면 화재현장출입을 통제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85년 2월 8일 즉시 손해사정에 임하지 않음으로써 화재현장이 원상태로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손해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화재발생 후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상기 사유로 경찰이 현장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85년 3월 7일 N경찰서 담당형사의 허락을 받고, 85년 3월 11일 계약자 입회하에 손해사정을 한 것이고 피해품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모조품이라는 시중 유사품 취급 상인들의 진술에 따라 제품회사 마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중 가액을 불명확한 경우에는 시중가액의 중간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고, 85년 3월 11일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명세서에 의하면 점포면적 4.8평의 총재고 가액이 1억 2천여만원으로서 평당 재고 가액이 2천 4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유사한 국내 유수의 골프상회인 서울 방배동 소재 'B골프', 용산구 소재 'H골프' 등의 경우 평당재고가액이 각각 3백 56만원 (7.5평), 2백 78만원 (15평)인 점 등을 비교하여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치 않고 1억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적치한 골프상회는 국내에 없다는 것이 골프업체의 의견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본 건 분쟁에 이르게 되었다.

3. 판정요지

「... 신청인 점포의 취급 품목을 보면 전문 골프상회로 볼 수 없고 화재발생일인 85년 2월 8일은 골프용품의 비성수기임에도 불과 5평 남짓한 점포면적에 1억 2천여만원에 상당하는 골프채, 양품류등을 진열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S 손해사정(주)도 정확한 손해사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더우기 신청인의 점포는 재개발지역으로 85년 3월 철거되어 재산해사정이 불가하므로 본 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로 결정한다.」

4. 後說

본 분쟁은 분쟁심의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행히 당사자간의 타협이 이루어져 S 화재해상(주)에서 신청인 K에게 4천 5백 80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종결을 보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로 지적된 점은 보험계약의 인수상 문제이다. 현행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3조 (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만원 이상), 보옥, 보석, 서화,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보험의 목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그와같은 물건은 사고발생 후에 그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거액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moral risk 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계약당시에 이의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함에 있다고 생각되는바, 본 건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목적물이 상기 약관규정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기재를 하여야 할 물건은 당연히 기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점, 본 건과 같이 고액보험일 경우 계약인수시 1회정도 현장을 실사하여 최소한의 위험사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모집인이 작성한 청약서만을 심사한 후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완벽한 계약인수 절차를 밟지 못한 점이 드러났고, 둘째로 손해사정상의 문제이다.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은 품목이 있는가 하면 본 건과 같이 외제양품을 취급하는 점포일 경우 그 품목의 구입경위 및 구입가격, 진열상태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이 있었고 조사과정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실히 가려야 할 손해품목을 미흡한 조사만으로 모조품이라 결정하였으며 또한 적정한 시중 가격도 제시하지 못한 점이 발견되었다. 셋째로 지적된 점은 관계당국인 경찰서와의 협조문제이다. 화재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를 받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손해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출입이 통제되었다는 이유로 1개월이나 지난 후에 손해조사를 하였으니 정확하고 공정한 사정을 할 기회를 놓쳤음은 물론이다. 적어도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익적 사업체인 보험자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아쉬운 사건이었다. □